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9. 9. 1.
□ 개정 : 2005. 3. 1.
□ 개정 : 2011. 6. 30.
□ 개정 : 2013. 11. 1.
□ 개정 : 2017. 3. 1.
□ 개정 : 2018. 3. 1.
□ 개정 : 2019. 6. 18.
□ 개정 : 2020. 3. 13.
□ 개정 : 2023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
2.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
3.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
4. 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
5. 대학별 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입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